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58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김재원·이해민·김준형

신장식 · 조 국 · 서왕진

김선민 • 차규근 • 염태영

박은정 • 민병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른 법령이나 실무상,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「민법」은 정관 작성,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 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,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.

한편, 「전자서명법」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.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,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아니함.

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, 온라인총회 시 사원 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.

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,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(안제40조, 제43조, 제73조 및 제76조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記名捺印"을 "기명날인 또는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43조 중 "記名捺印"을 "기명날인 또는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73조제2항 중 "書面이나 代理人"을 "서면,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"으로 한다.

제76조제2항 중 "記名捺印"을 "기명날인 또는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명 및 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, 제73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0條(社團法人의 定款) 社團法	第40條(社團法人의 定款)
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	
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	
記名捺印하여야 한다.	기명날인 또는 서명(「전자서
	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
	자서명을 포함한다)
	– ,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第43條(財團法人의 定款) 財團法	第43條(財團法人의 定款)
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	
出捐하고 第40條第1號 乃至 第	
5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	
作成하여 <u>記名捺印</u> 하여야 한다.	기명날인 또는 서명
	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
	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
第73條(社員의 決議權) ① (생	第73條(社員의 決議權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社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	② 서면, 전자적 방법 또
決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.	<u>는 대리인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第76條(總會의 議事錄) ① (생	第76條(總會의 議事錄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
2	議事	錄o] 는	議事	의	經記	围,	要
領	및	結り	長를	記載	載하	·고	議	長
및	出歷	통한	理等	事小	記	名拐	科	[하
여	야 히	나다.						

②
기명날인 또
는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
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
<u>한다)</u>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